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08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이훈기 · 김문수 · 이재관
정일영 · 박지원 · 이주희
남인순 · 송재봉 · 박해철
허종식 · 박용갑 · 오세희
의원(12인)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 외에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은 부재함.

또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지급 받을 권리는 결정서正本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 바.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

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가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시설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란 일제강점기 이후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진실규명된 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제5조(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①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보상 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도 받지 아니한다.

제3장 보상 등

제9조(보상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을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상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료지원금) ①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금등의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심의) ① 제14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상금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상금등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19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3조의 지급 결정 및 제18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0조(보상금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장 추모사업 등

제22조(추모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2. 위령·추모행사 개최
3. 기록물 수집·전시
4.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추모·기념을 위한 사업

제23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회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2. 자립 지원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심의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심의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